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6.25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대조동 89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9-10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기존 도로망을 고려하여 주변 주민들이 보행(통학 등)이 원활하도록 보행 동선계획 개선 바람.			
- 북동측 8m도로와 남서측 공원 옆 8m도로에 보도(통학로) 3m 확보 바람.			
- 북서측 20m도로와 단지내 중앙부 15m 도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환경 개선 바람.			
- 101~102동, 109~110동 사이 비상차로 동선을 동일한 쪽으로 공원 까지 연결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바람.			
- 단지내 보행동선은 조경식재 등을 조정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보행시 혼선이 없도록 개선 바람.			
○ 테라스하우스동의 건축계획 개선 바람.			
- 테라스 부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세대 좌측부 차면시설 설치 바람(도로에 접한 지상1층 전면부 포함).			
- 환기(배기) 성능을 검토하여 환기구 높이를 높이거나, 강제 배기설비 설치 바람.			
- 지하층이 되지 않도록 1/2이상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9.6.2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9.6.25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대조동 89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9-10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 〈 공통사항 〉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 가. 녹색건축인증 최우수(그린1) 등급 적용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+ 등급 적용 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13.63%이상 적용 (PV :369.48kW, 연료전지 : 264kW, 지열에너지 : 880kW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『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』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			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9.6.2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